

「아시아문화개발원」 보조금 집행실태 특별감사 결과

가. 감사개요

■ 감사기간 : 2015. 1. 5. ~ 1. 16. (10일간)

■ 감사반 : 감사담당관 등 7명 (실지감사)

■ 감사내용

- 우리 부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지원한 민간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 사항

나. 감사결과

(단위 : 천 원, 건)

| 합 계 | | | 신분상 조치 | | 재정상 조치 | | 행정상 조치 | | | | 모범 사례 |
|-----|--------|----|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----|----|-------|
| | | | | | | | 주의 | 개선 | 권고 | 통보 | |
| 건수 | 금액 | 인원 | 건수 | 인원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건수 | 건수 | 건수 | 건수 |
| 13 | 22,872 | | | | 2 | 22,872 | 4 | 3 | 2 | 2 | |

※ 첨부서류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감사처분 요구내용

| 연번 | 지 적 내 용 | 조 치 사 항(안) |
|----|--|--|
| 1 | <p>○ 관사임차 국고보조금 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2. 2. 2.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원장 관사 사용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(2012. 3. 2.~2014. 3. 1.)체결 - 원장이 의원면직(2013.5.21.)됨에 따라 관사 임대차 계약 해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(2013.5.31.)받았으나, 2015. 1.16. 감사일 현재 동 임차보증금 20백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별도 관리 | <p>○ 시정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납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고 있는 관사임차 보증금 20백만 원 회수 |
| 2 | <p>○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○○○○사업팀 ◇◇감독 □□□은 「2013년 아시아예술극장 인프라 구축 사업」 등을 진행하면서 커피숍, 식당 등에서 업무추진비 1,256,620원(64건)을 사적으로 사용 - 또한 국외 출장 시 일비를 지급 받았음에도 국내공항 이동 택시비용을 업무추진비(11건 207,600원)로 결제하고, 출장지에서 사적용무로 사용한 식사비용 1,340,490원(31건) 등을 간담회비로 정산하는 등 업무추진비 총 2,804,710원(106건)을 부적정하게 집행 - ○○○○사업팀 직원 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가 중국 출장중 업무추진비 67,650원을 사적으로 사용 | <p>○ 시정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(□□□ 2,804,710원/■■■■■ ■■■■■■ 67,650원) 회수 |
| 3 | <p>○ 인사규정 및 직원특별채용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원 「인사규정」에 특별채용 자격요건과 전형방법만 명시하고 있을 뿐, 특별채용 사유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위임규정도 없으며 원장이 「특별전형직원채용규칙」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- 2012년에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특정인(△△△)을 ▽▽▽▽ ▽▽▽팀장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채용절차 진행하는 등 부적정 하게 인사업무처리 | <p>○ 주의 및 개선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기관주의’ - 특별전형에 의한 직원 채용사유를 「인사규정」에 정하도록 규정 개선 요구 |

| 연번 | 지 적 내 용 | 조 치 사 항(안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|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4 | <p>○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선금지급업무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자에게 선금지급 시 증권·보증서 등으로 선금 지급액 (계약종료 후 60일까지의 이자상당액 포함) 이상의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나, 개발원 「계약사무처리규칙」에 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권확보 부실우려 - <<<<<<기념관 전시공간 디자인설계 등 2건의 계약에 대하여 채권(보증보험증권이나 각서)확보도 없이 선금 230백만 원 지급 | <p>○ 주의 및 개선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권미확보 관련자 ‘주의’ - 선금 지급시 채권확보관련규정 개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 | <p>○ <<<<<<페스티벌 무대제작계약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쟁입찰대상 계약(5,000만 원이상)인 <<<<<<페스티벌 무대제작 계약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3개로 분할 후 3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무대제작업체 선정(수의계약) 현황 (단위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31 1070 1129 1299"> <thead> <tr> <th>연도</th> <th>제작업체</th> <th>대표자</th> <th>제작비용</th> <th>계약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2013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30,000</td> <td>음향,조명,무대,구조물 등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15,220</td> <td>재즈세트,발전차,구조물 등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29,780</td> <td>음향,조명,무대,영상장비 등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2014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30,000</td> <td>무대설치,영상,발전차 등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27,000</td> <td>무대설치, 악기, 음향 등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28,000</td> <td>무대조명, 발전차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연도 | 제작업체 | 대표자 | 제작비용 | 계약내용 | 2013년 | | | 30,000 | 음향,조명,무대,구조물 등 | | | 15,220 | 재즈세트,발전차,구조물 등 | | | 29,780 | 음향,조명,무대,영상장비 등 | 2014년 | | | 30,000 | 무대설치,영상,발전차 등 | | | 27,000 | 무대설치, 악기, 음향 등 | | | 28,000 | 무대조명, 발전차 등 | <p>○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체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 ‘엄중 경고’ |
| 연도 | 제작업체 | 대표자 | 제작비용 | 계약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013년 | | | 30,000 | 음향,조명,무대,구조물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15,220 | 재즈세트,발전차,구조물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29,780 | 음향,조명,무대,영상장비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014년 | | | 30,000 | 무대설치,영상,발전차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27,000 | 무대설치, 악기, 음향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28,000 | 무대조명, 발전차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6 | <p>○ 직원공개채용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원 설립(11.12.28) 이후 총 6회의 직원공개채용에서 총 35명을 채용하면서 8명에 대하여 본인이 응시한 직급보다 하향 조정*하여 채용 * 직급 하향조정 채용 : (3급→4급)2명, (4급→5급)3명, (5급→6급)3명 - 직급별로 전형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직급의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다시 채용절차 등을 진행함이 타당했으나, 부당하게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채용함으로써 잠재적 응시자의 채용기회 박탈 및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| <p>○ 주의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기관주의’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연번 | 지 적 내 용 | 조 치 사 항(안) |
|----|---|--|
| 7 | <p>○ 정원 외 근로자 채용 등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원 「직제규정」에 계약직 인원, 자격,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, 장관 승인 없이 계약직 채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 - 계약직을 특별채용하면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없이 내부결재(◇◇감독이 작성한 특별채용에 관한 사유서 등 첨부)만으로 채용, 능력검증 부실 우려 <p>※ 2014. 8. 27. 이후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나 ◇◇감독과 해당 팀장이 면접 실시, 실효성 없음</p> | <p>○ 개선 및 권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직원 채용관련 규정 개정요구 - 특별채용시 능력검증 방안 강구 |
| 8 | <p>○ 도서구입 및 관리소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원당시부터 2015.1.15.까지 자료(도서 총4,280권)를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으나, 소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동일한 도서 2권 이상을 중복 구입(232권) - 구입도서를 각 부서별로 분산 보관하여 타부서 직원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관리소홀 | <p>○ 권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서구입 및 관리방안 강구 |
| 9 | <p>○ 콘텐츠 공모 및 계약체결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3년 ‘▷▷▷▷▷ 콘텐츠 공모’를 통하여 3건, 2014년 ‘▶▶▶▶▶ 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과제 공모’를 통하여 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응모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가격평가 없이 제안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계약예규 제7조에서 정한 계약절차 미준수(예정가격 산정 등) | <p>○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업무 관련 규정 준수 및 업무특성을 고려, 계약 관련 규정 마련 |

| 연번 | 지 적 내 용 | 조 치 사 항(안) |
|----|--|---|
| 10 | <p>○ 공무출장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개관 준비를 위한 업무특성상 국내외 출장빈도가 높음에도, 출장 시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* 국내외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43명, 총 62만 마일리지 (2011.11.28.~2014.12.31) - 예산의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해 항공마일리지 관리·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 필요 | <p>○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공마일리지 관리 방안 마련 |